

제2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 례 안  
(4건)

거 창 군

# --- 목 차 ---

의안번호	조 례 명	쪽수
2024-42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총괄과)	1
2024-43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산림과)	15
2024-44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환경과)	23
2024-45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축과)	37

#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42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유형이 7개 유형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형별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제한에 대한 상세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유형 확대(안 제3조)

1) 현행: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2) 신설: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나.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별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내용 신설함(안 제8조~제10조, 제12조)

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정비(안 별표 1, 별표 2)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3. 5.~3. 2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 제8호) 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로 “승고”를 “높임”으로 한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가. 침수위험지구: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

나. 유실위험지구: 집중호우 및 태풍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해 하천 시설물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

다. 고립위험지구: 집중호우 및 태풍, 폭설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폭설로 인하여 잠수교, 다리, 도로 등 마을로 진입·출입하는 교통 기반시설 등의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

라. 취약방재시설지구: 저수지·댐, 제방,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사방댐 등 방재시설에 대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침수, 붕괴, 고립 등의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시설

마. 붕괴위험지구: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강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산

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바. 상습가뭄재해지구: 연간 강수량 저조에 따른 용수공급 부족으로 인해 제한급수 및 상습적인 가뭄피해가 발생한 지역

제4조 및 제5조 중 “안”을 “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침수위험지구 등”을 “침수위험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붕괴위험지구”를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한다.

제7조 조 제목 및 같은 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침수위험지구 등”을 “침수위험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승고”를 “높임”으로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를 “다만, 대지를 높임으로써”로 “승고 전후의 유수”를 “유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공중이”를 “공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침수위험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1조(중전 제8조)제1항제1호 중 “직·간접”을 “직간접”으로 “안”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간접”을 “직간접”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유실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유실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다리, 잠수교, 지하 관로 등 유실 피해 유발 구조물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다리, 잠수교, 지하 관로 등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

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유실위험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9조(고립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고립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고립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고립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시설 설치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고립위험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0조(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취약방재시설물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취약방재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재건설 등 재해예방 사업을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

- 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2조(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상습적인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u></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p>	<p><u>거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u></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p> <p>가. 침수위험지구: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p> <p>나. 유실위험지구: 집중호우 및 태풍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해 하천 시설물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p> <p>다. 고립위험지구: 집중호우 및 태풍, 폭설 등 내습 시 하천 수위상승, 폭설로 인하여 잠수교, 다리, 도로 등 마을로 진입·출입하는 교통 기반시설 등의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p> <p>라. 취약방재시설지구: 저수지·댐, 제방,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사방댐 등 방재시설에 대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침수, 붕괴, 고립 등의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시설</p> <p>마. 붕괴위험지구: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강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p> <p>바. 상습가뭄재해지구: 연간 강수량 저조에 따른 용수공급 부족으로 인</p>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위험

해 제한급수 및 상습적인 가뭄피해가 발생한 지역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삭 제>

<삭 제>

6.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

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 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 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를 높임으로써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위험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1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

을 해소할 수 있는 공중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 <신 설>

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제8조(유실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유실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다리, 잠수교, 지하 관로 등 유실 피해 유발 구조물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다리, 잠수교, 지하 관로 등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유실위험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 변경

<신 설>

제9조(고립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고립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고립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고립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 시설 설치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고립위험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 변경

<신 설>

제10조(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취약방재시설물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취약방재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재건설 등 재해예방 사업을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 변경

<신 설>

제12조(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상습적인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상습가뭄재해지구에서의 위험을 해소하고 피해도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별표 1] 침수위험지구의 표지판(제6조제1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p><b>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침수위험지구)</b></p> <p>지형도(혹은 약도)에 침수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p> <p>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p> <p>문의(거창군청, T. 055-940-0000) 거창군수</p> <p>침수위선(적색) → 문자로 침수위선 표기</p> <p>침수흔적(청색삼각형) 문자로 태풍루사, 2002 등으로 표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색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내판(어두운 노랑)</li> <li>글씨(검정)</li> <li>침수위선(빨강)</li> </ol> </li> <li>안내판 규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로 1.2m</li> <li>세로 1m 내외</li> </ol> </li> <li>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 이상</li> <li>색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내판(어두운 노랑),</li> <li>글씨(검정)</li> <li>침수위선(빨강)</li> <li>기둥은 10cm 간격으로 노랑색과 검정색(예시 참조)으로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li> </ol> </li> <li>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li> <li>침수위선 표기: 1cm 두께의 빨강색으로 기둥에 원형 표시(예시 참조)</li> <li>침수흔적 표기: 청색 삼각형과 문자로 표기(예: ▶ 태풍루사, 2002)</li> <li>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li> <li>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li> </ol>

[별표 2] 붕괴위험지구 등의 표지판(제6조제2항 관련)

안내판 예시	안내판 설치 요령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b>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b></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지형도(혹은 약도)에 붕괴위험지구 범위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할 것</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45%;"> <p>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p> <p style="text-align: right;">문의(거창군청, T. 055-940-0000) 거창군수</p> </div> </div>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내판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가로 1.2m</li> <li>나. 세로 1m 내외</li> </ul> </li> <li>2. 기둥 규격: 지름 10cm로 바닥에서 안내판 하단까지 2m 이상</li> <li>3. 색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안내판(어두운 노랑)</li> <li>나. 글씨(검정)</li> <li>다. 붕괴위험지역 범위(빨강)</li> <li>라. 기둥은 노랑색으로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제작할 것</li> </ul> </li> <li>4. 재질: 안내판 및 기둥은 철 또는 알루미늄이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함</li> <li>5. 설치장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주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li> <li>6. 설치개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량 설치</li> </ol>

#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24-43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구성된 백두대간 거창 자연휴양림과 모험·체험을 위한 산림레포츠시설을 아우르는 거창 산림레포츠파크를 설치·운영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위치를 정함(안 제2조)
- 나. 시설 및 개관을 정함(안 제3조)
- 다. 이용 신청 등을 정함(안 제4조)
- 라.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반환을 정함(안 제5조·제6조, 별표 1~별표 3)
- 마. 위탁운영을 정함(안 제7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지방자치법」 제161조
- 나. 예산조치: 2024년도 예산 1,086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합의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3. 22.~4. 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휴양과 산림레포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창 산림레포츠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레포츠파크의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 거창 산림레포츠파크(이하 “산림레포츠파크”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 거창 자연휴양림
  2. 마운틴코스터
- ② 산림레포츠파크는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빼재로 2099-35에 둔다.

제3조(시설 및 개관) ① 산림레포츠파크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등의 숙박시설
2. 생태놀이터 등의 체험·교육시설
3. 오토캠핑장,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운영사무실
4. 마운틴코스터 등 산림레포츠를 위한 시설

② 산림레포츠파크는 규칙으로 정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제4조(이용 신청 등) ① 시설을 이용 및 체험하려는 사람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그 이용 등을 승인한다.

제5조(이용료) ① 군수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이용료는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책, 시설 및 산림레포츠파크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실제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이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산림레포츠파크 활성화를 위해 거창군에서 주최·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한다.

**제7조(위탁운영)** 군수는 산림레포츠파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산림레포츠파크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용료(제5조 관련)

시설명	구분		이용기준	이용료	
				성수기	비수기
1. 주차장	가. 승용차, 승차인원 15명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30분	500원 (10분 초과당 200원)	
			1일	5,000원	
	나. 승차인원 16명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차		30분	1,000원 (10분 초과당 400원)	
			1일	10,000원	
2. 오토캠핑장	가. 데크형	대형	1일	70,000원	56,000원
		일반형	1일	40,000원	32,000원
	나. 자갈형		1일	40,000원	32,000원
3. 숙박시설	가. 산림휴양관	5인 / 1실	1일	120,000원	96,000원
	나. 숲속의집	6인 / 1실	1일	180,000원	144,000원
4. 산림레포츠를 위한 시설	가. 질코스터		1회	15,000원	
	나. 로프어드벤처		1회	15,000원	
	다. 등반체험시설		1회	10,000원	
	라. 트리탑		1회	5,000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 통합이용권		1회	35,000원	
	바. 마운틴코스터		1회	20,000원	

[비고]

1. 시설을 위탁 또는 사용허가 중인 경우,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 기준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 징수할 수 있다.
2. 1회 주차 시 누적 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 1일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3. 오토캠핑장, 숙박시설, 산림레포츠를 위한 시설 중 어느 하나를 이용할 경우 주차장 이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

[별표 2] 이용료의 감경기준(제6조 관련)

시설	대상	감경률(이용료에 대한 백분율)
짚코스터 등반체험시설, 로프어드벤처, 트리탑 및 마운틴코스터	가. 국가보훈대상자	100분의 50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라. 다자녀가정	
	마. 거창군민	100분의 30
	바. 산림레포츠파크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사. 청소년	100분의 20
아. 단체		
<p>[비고]</p> <p>1. 이용료 감경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감경률이 큰 것을 적용한다.</p> <p>2. 이용료 감경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p>		

[별표 3] 이용료의 반환기준(제7조 관련)

사유	기준	반환율(이용료에 대한 백분율)
1. 이용자가 취소한 경우	가. 이용예약일 5일 전까지 취소	100분의 100
	나. 이용예약일 3일 전까지 취소	100분의 90
	다. 이용예약일 1일 전까지 취소	100분의 70
	라. 이용예약일 그날 또는 탑승시간 전 취소	100분의 50
	마. 이용예약일 그날 또는 탑승시간 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반환 없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산림레포츠 파크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100
3. 산림레포츠 파크의 사정으로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 거창군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거창 산림레포츠파크 운영·관리 비용
- 나. 관련 조문: 산림레포츠파크의 설치 등(안 제2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합계
군비	1,086	1,108	1,130	1,152	1,176	5,652

※ 최근 5년 평균 물가상승률 2퍼센트 반영

## 3. 관련 의견

레저와 휴양이 공존하는 거창 산림레포츠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예산 필요함

## 4. 비용추계 요약: 2024년도 예산

- 가. 인건비: 838백만원
- 나. 운영경비(보험료, 수선유지비, 제세공과금 등): 186백만원
- 다. 일반관리비: 62백만원

작성자 산림과장 신종호



#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44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 1. 제안 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함에 따라 그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군민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임형식에 맞게 정비함(안 제1조·제3조)
- 나.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 신설함(안 제5조)
- 다. 법령 등 중복·재기재 삭제(현행 제5조제5호·제6호,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제19조)
- 라.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함(현행 제18조, 별표)
  - 1) 이유: 군수의 재량권 침해
  - 2) 입법형식 변경: 규칙으로 부과기준 정함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1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확보 예정
-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4. 3. 5.~4. 3.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별지 제1호서식에 성별구분항목 신설)

##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거창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춰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앞에 “제2장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를 삭제한다.

제5조 조 제목 “(설치기준)”을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8조 조 제목 “(편의용품의 비치·제공)”을 “(공중화장실의 편의용품 제공)”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할 것. 다만, 화장실의 이용빈도나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갖추두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을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조 제목 “(관리비 등 지원)”을 “(개방화장실의 관리비 등 지원)”으로 한다.

제14조 앞에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를 삭제한다.

제15조 조 제목“(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이동화장실의 설치·관

리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하여”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남자용과 여자용”을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제4호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정하여야 한다.”를 “지정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청결을 유지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독하여야 한다.”를 “소독할 것”으로 하며 “비치·제공하여야 한다.”를 “갖춰두고 제공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16조 앞에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를 삭제한다.

제6장(제18조·제19조)을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b>현행</b></p> <p>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p> <p><b>제1장 총칙</b></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3조(적용범위)</b>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한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p> <p>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에 설치한 화장실</p> <p>2. 법 제3조제16호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 및 시설에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p> <p>3.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규모 이상의 시설과 군수가 공중화장실 등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p> <p><b>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b>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개정안</b></p> <p>거창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p> <p><b>&lt;삭 제&gt;</b></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목적으로 한다.</p> <p><b>제3조(적용범위)</b>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p> <p><b>제4조(군수의 책무 등)</b>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p>

제2장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제5조(설치기준) 영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시설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해야 함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3. 필요할 경우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음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함
6. 범죄 및 각종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음

<신 설>

<신 설>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춰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삭 제>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영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시설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해야 함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3. 필요할 경우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음

<삭 제>

<삭 제>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군수가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위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군수가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공중화장실의 편의용품 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위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할 것. 다만, 화장실의 이용빈도나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0조(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갖추두고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 <삭 제>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비 등 지원)** ①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화장실 관리비 일부 또는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개방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비 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2. 군수가 시설노후 등의 사유로 개방화장실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

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개방화장실의 관리비 등 지원)**

①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화장실 관리비 일부 또는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개방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비 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2. 군수가 시설노후 등의 사유로 개방화장실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 **<삭 제>**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6장 과태료 부과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준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추두고 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별지 제1호서식]

##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width: fit-content; margin: auto;">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전경 사진</p> </div>													
소재지				화장실 명칭									
지역 구분		설치 및 관리 주체		설치 연도		관리 책임 공무원		소속					
설치 주체								직급					
설치 관리 주체								성명					
관리인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		계	남	여			
규모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시설	난방시설	냉방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 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그 밖에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 사항	금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액 (천원)			
<신 설>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요인: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운영 비용
- 나. 관련조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안 제5조)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작성자 환경과장 김성남



#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4-45
----------	---------

제출자	거창군수
-----	------

## 1. 제안이유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을 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확대 등을 정함(안 제2조·제11조의2·제11조의3)

- 1) 범위 확대: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그 밖에 유사한 시설
- 2) 법령위임사항 신설: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 3) 위탁 근거 신설

### 나. 군 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

### 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 선임방법을 확대함(안 제5조)

- 1) 군수가 위촉 ⇒ 위촉 또는 공개채용

### 라.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관리 및 지원을 신설함(안 제10조)

- 1) 사후관리 계획 수립
- 2) 완료지역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재정지원

### 마. 법령개정사항 등 정비함

- 1) 법령 개정사항 반영

#### 가)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특례 삭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현행 제12조)

- 2) 법령·조례의 중복·재기재 사항 삭제(현행 제10조·제13조)

#### 가) 도시재생사업 지원 시 절차 등

나) 시행규칙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조·제30조의2·제32조
-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0조·제39조제1항

나. 예산조치: 2024년도 예산 50백만원 확보

다. 합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검토

####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4. 3. 12.~4. 1.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 활성화”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위촉”을 “위촉 또는 공개채용”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관리 및 지원)**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확산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3.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1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안전·이익을 보장하고,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문화, 예술,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면제 대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시재생지원센터
2. 사업추진협의회
3. 주민협의체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1조의3(공동이용시설의 위탁)**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단체 등에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u>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b>제2조(공동이용시설)</b>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li> <li>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li> <li>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정자,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li> </ol>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 <u>&lt;신 설&gt;</u></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u>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b>제2조(공동이용시설)</b>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li> <li>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li> <li>3.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정자,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li> <li>4.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li> <li>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li> </ol>
<p><b>제3조(도시재생위원회)</b> 「거창군 계획조례」따른 거창군 계획위원회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p>	<p><b>제3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등)</b>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p>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거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거창군과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신 설>

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거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공개채용한다.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거창군과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관리 및 지원)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확산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3.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

제11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안전·이익을 보장하고,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문화, 예술,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면제 대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시재생지원센터

2. 사업추진협의회

3. 주민협의체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신 설>

제11조의3(공동이용시설의 위탁)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단체 등에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 제12조(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 완화 범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건폐율 이내로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 <삭 제>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도시재생사업 지원

나. 관련 조문: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관리 및 지원(안 제10조)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4)	2차연도 (2025)	3차연도 (2026)	4차연도 (2027)	5차연도 (2028)	합계
군비	50	50	50	50	50	250

### 3. 관련 의견

보조금 지원으로 지속적인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주민참여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1) 2024년도 예산 50백만원

2) 주민이 스스로 제안·참여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작성자 도시건축과장 직무대리 박경순